주성엔지니어링㈜

인권경영운영정책

주성엔지니어링㈜

◆ 개정 시행 이력

순번	변경 사항	시행일	작성자	부서
1	인권경영운영정책 수립	2024.06.24	권광록	인사Part

목 차

제 1 장 인권 경영 정책 4
제 1 조 (인권 경영 헌장) 4
제 2 조 (범위) 4
제 3 조 (인권 경영 거버넌스) 5
제 4 조 (인권 위험실사 관리 프로세스) 5
제 5 조 (인권 고충처리 프로세스) 6

제 1 장 인권 경영 정책

제 1 조 (인권 경영 헌장)

주성엔지니어링㈜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 'UN인권기본헌장'과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 등 국내외의 보편적 규범이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관한 국내와 해외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사회와 상시 소통하고 상생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에 있어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여성 임직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중에 취득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우한다.
리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서향 등에 있어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중에 취득한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함께 실천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제 2 조 (범위)

본 정책은 주성엔지니어링㈜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력사, 고객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준수한다.

제 3 조 (인권 경영 거버넌스)

주성엔지니어링㈜ 임직원 들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있어 최고 경영진이 참여한 인권 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이사회(경영위원회)	인권 경영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CEO	인권 경영 정책 의사결정 및 피드백
▼	
실무 부서	인권 영향 평가, 개선활동 수행

제 4 조 (인권 위험실사 관리 프로세스)

인권 리스크를 예방 및 진단 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권영향 평가 프로세스를 통하여 임직원, 여성, 아동,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1. 인권 Risk 평가 계획 수립
   1) 주성의 주요 부서/관계자 들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점검/분석한다.
   2) 주성의 주요 부서/관계자 들은 기존 발생된 인권 리스크를 파악 하여 향후 경영에 있어 발생 가능한 Risk 인지를 파악한다.
   3) 인권 Risk 를 선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2. 인권 Risk 영향 평가 및 개선
   1) 1 항에서 선별된 인권 Risk 에 대하여, 현장조사, Survey 를 통하여 점검 및 평가한다.
   2) 잠재적 인권 리스크 분석하고 심각성을 확인 한다.
   3) 인권 Risk 별 발생 원인을 분석 하고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수립하여, 단기·중장기로 인권 Risk 를 개선하는 과제를 수립한다.
3. 모니터링
   1) 1,2 항을 통한 시행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 한다.
   2) 효과성이 저조하거나, 미흡한 개선 활동을 보완하고 개선한다.

제 5 조 (인권 고충처리 프로세스)

주성엔지니어링 임직원 및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인권 침해가 발생 시, 주성에서 보유한 인권 고충처리 채널(이하 '헬프라인')을 통하여, 인권 이슈를 제보할 수 있다. 헬프라인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작성 가능하며, 제안/제보자가 안심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한다.

1. 프로세스

신고 접수	주성 Homepage : 제안·제보 시스템
▼	
사실 확인·조사	· 신고 내용 확인 · 사실 확인 및 조사
▼	
위원회 심의·조치	·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